

『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최근,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
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, 장

에인,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관할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통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